

# 정제두묘 (기념물 제56호)

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5

## 현상변경허용기준

### 범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봉	경사지봉 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지명보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재 보존,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/li> <li>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li> </ul> </li> </ul>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여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어가아도록 함.</li> </ul>	
2구역	-	최고높이 10m 이하
그외지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(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).</li> </ul>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준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</li> <li>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높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<sup>2</sup>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·관성</li> <li>위험률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</li> <li>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석축, 옥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른)</li> <li>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</li> <li>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li> </ul>	

■ SCALE : 1/5,000(A3)

0 50 100 250m

